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콘텐츠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 요건 및 그 종류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할 안전수칙들, 금지되는 운전행위, 전동킥보드 등을 탈 수 있는 도로, 주차 및 정차 방법,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 등 전동킥보드 등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1
1. 전동킥보드 등 이해하기 4
1.1. 전동킥보드 등 이해하기 4
1.1.1. 전동킥보드 등이란 4
1.2.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기준 7
1.2.1.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하기 7
2. 전동킥보드 등 타기 13
2.1. 주행 전 운전자 준수사항 13
2.1.1. 주행 전 준비 및 유의사항 13
2.2. 통행이 가능한 도로 15
2.2.1.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주행하기 15
2.3. 안전운전을 위한 수칙 19
2.3.1. 도로주행 시 준수사항 19
2.3.2. 금지되는 운전행위 23
2.4. 주차 및 정차하기 25
2.4.1. 주·정차 장소 확인하기 25
3.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29
3.1. 사고 발생 시 조치 29
3.1.1.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29
3.2.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배상 33
3.2.1.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 33

1. 전동킥보드 등 이해하기

1.1. 전동킥보드 등 이해하기

1.1.1. 전동킥보드 등이란

전동킥보드 등이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들을‘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
>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
> √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
>
> √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및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함)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에는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방식)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및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스로틀(Throttle) 방식이라고 하고,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PAS 방식이라고하는데. 현행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PAS 방식은‘전기자전거’에 해당하여‘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스로틀 방식은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됩니다(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 또한,‘PAS방식+스로틀방식 겸용’의 경우에도 전동기의 동력 만으로 자전거를 움직일 수 있으므로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됩니다.

▪ 위 개인형 이동장치와 유사한 것으로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가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경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
		

※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제외 사유

▪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 등은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할 경우 교통안전에 위험 요소가 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기존과 같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출처: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각 이동수단 별 비교

구분	종류	면허	도로이용	보호장구
원동기장치 자전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오토바이용 안전모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	〃	〃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	〃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없을 시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자전거용 안전모
	전동이륜평행차	〃	〃	〃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	〃	〃
자전거	PAS 방식 전기자전거	면허 불필요	자전거도로 통행	자전거용 안전모
	자전거	면허 불필요	〃	〃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도로교통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비교

구 분		(구)도로교통법 (제17311호)	(구)도로교통법 (제17371호)	현행 도로교통법 (제17891호)
시행일		-	'20. 12. 10.	'21. 5. 13.
법적 지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 中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시) 개인형이동장치	
통행방법		'차도'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	**원동기면허 이상** ※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처벌		○ (30만원↓)	×	○ (범칙금 10만원)
만 13세 미만(21년 5월 이후 만 16세 미만) 운전금지		×	○	
만 13세 미만(21년 5월 이후 만 16세 미만)에게 운전하게 한 보호자 처벌		×	×	○ (과태료 10만원)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	○	
	처벌	×	×	○ (범칙금 4만원)
	안전모 착용	○ (오토바이용 안전모)	○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 범칙금)	×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미착용시에도 운전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작동	○	○	
	처벌	○ (20만원↓ 범칙금)	×	○ (범칙금 1만원)
	약물·과로 등 운전	○	○	
	처벌	○ (약물 3년↓·1천만원↓ 과로 30만원 ↓)	×	○ (범칙금 10만원)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1년↓ 500만원↓	단순음주 :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4만원	범칙금 3만원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2만원	범칙금 1만원	범칙금 1만원

<출처: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 12. 10.),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참조>

※ 일러두기

▪ 이하 이 콘텐츠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전동킥보드 등'으로 지칭합니다.
'전동킥보드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별도로 규정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으로 분류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제21호의2).

1.2.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기준

1.2.1.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하기

전동킥보드 등은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확인대상제품 표시(KC 인증마크)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확인시험 및 신고

▪ 전동킥보드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제2항제72호 및 부속서 72(전동보드)].

▪ 따라서 전동킥보드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동킥보드 등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동킥보드 등이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기준

▪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4항 본문).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서는 전동킥보드 등의 겉모양, 구조, 내부 배선, 배터리, 핸드 브레이크, 성능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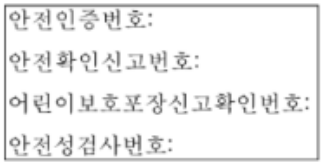
> ※ 그 밖의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 요건, 시험방법, 검사방법, 표시사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KC 인증)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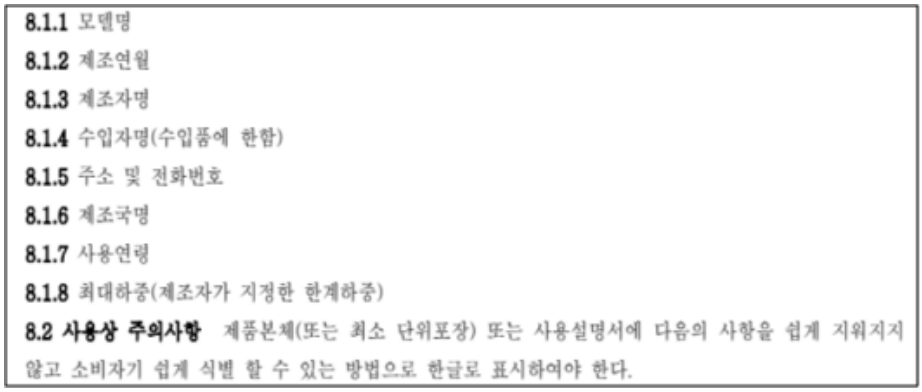
▪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동킥보드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동킥보드 등이나 그 포장에 아래와 같은 안전확인의 표시 및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함)를 해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 안전확인표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B.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 8.1 표시사항 참조)


8.1.1 모델명
8.1.2 제조연월
8.1.3 제조자명
8.1.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8.1.5 주소 및 전화번호
8.1.6 제조국명
8.1.7 사용연령
8.1.8 최대하중(제조자가 지정한 한계하중)
8.2 사용상 주의사항 제품본체(또는 최소 단위포장) 또는 사용설명서에 다음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기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 따라서 소비자는 전동킥보드 등을 구입할 때 KC 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온라인 판매 페이지, 제품, 포장 등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제조업자 등은 판매중지 등의 명령을 받거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판매중지 등 명령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전동킥보드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다음에 따라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 등”이라 함)를 명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제2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구분	내용
▪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 ▪ 안전확인신고 없이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음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 ▪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음

안전확인신고, 안전확인표시등 위반자에 대한 처벌

구분	처벌 내용
▪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안전기준을 위반해 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 안전확인신고 없이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제17호, 제19호 및 제23호)
▪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2항제2호)
▪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않은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1조제2항제7호)

과거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동킥보드 등은 추가 확인을 받아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 2020년 2월 16일 전에 안전확인신고 된 경우

▹ 2020년 2월 16일 전에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형차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6개월까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1항 본문].

※ 2020년 2월 16일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안전기준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가 제정된 날임

▹ 다만, 이후에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1항 본문].

▪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제작·수입·판매된 제품의 경우

▹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제조·수입·판매된 것 중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것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확인받은 날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3항제1호].

※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확인신고

Q. 2019년에 전동킥보드를 구매해서 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도 이제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다고 하던데, 속도 및 무게요건(25km/h 이하, 30kg 미만)만 충족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건가요

A. 아닙니다. 2020년 2월 16일 전에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동킥보드는 속도 및 무게 요건 외에도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확인시험을 받아야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가 되어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가 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안전기준 확인 방법

■ 2020년 2월 16일 이후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의 확인
√ 별도의 신청 또는 확인 절차 없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
√ (확인) KC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조사·제품명 등을 우선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확인신고 게시판(http://blog.naver.com/personal-mobility)에 게재하여 공유
■ 2020년 2월 16일 이전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의 확인
√ 2020년 12월 10일부터 6개월까지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추가 확인을 거친 제품만 통행 가능
√ (검토) 2020년 2월 16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 된 제품은 현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무게, 등화장치 등 추가 확인
√ (확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확인신고 게시판(http://blog.naver.com/personal-mobility)에 게재하여 공표
■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제작·수입·판매된 제품의 확인
√ 그 밖에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제작·수입·판매된 제품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044-201-3821)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054-459-7427)에 문의해 확인

<출처: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확인신고 게시판(http://blog.naver.com/personal-mobility) 참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

▪ 2018년 3월 19일 전에 안전확인신고 된 경우

▹ 2018년 3월 19일 전에 안전확인신고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2020년 4월 17일부터 6개월까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2항 단서].

▪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제작·수입·판매된 제품의 경우

▹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제조·수입·판매된 것 중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것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확인받은 날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3항제2호].

스로틀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확인 방법

▪ 2018년 3월 19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의 경우

절차		추가시험 요청		추가시험 시행 및 확인
주체		제작·수입·판매자		인증기관(KTC, KCL)

√ (신청) 제작·수입·판매자가 인증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으로 신청
√ (검토) 속도(25km/h 미만), 무게(30kg 미만) 제한 추가 확인
√ (확인) 추가 확인 완료 이후부터 계속하여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인증기관에서 일반의뢰 성적서 시험·발급으로 확인

▪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제작·수입·판매된 제품
√ (신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인이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로 신청
※ 2012년 10월 이전 구매확인 증명내용, 제조사, 모델명, 인증국가, 제품설명서(출력, 무게, 속도제한 등) 등과 함께 신청

절차		확인 신청 (국민신문고)		해외기준 검토		충족 여부 확인
주체		개인		행정안전부 등		행정안전부

√ (검토) 해당 국가의 전기자전거 안전인증 기준 비교
※ 국내 안전확인신고의 기준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안전성 적합 여부 확인
√ (확인) 검토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안전요건 충족 확인서 통보 및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에 게시하여 공표
※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전기자전거 목록과 안전요건 적합 확인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출처: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 12. 10.),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붙임 2 참조>

2. 전동킥보드 등 타기

2.1. 주행 전 운전자 준수사항

2.1.1. 주행 전 준비 및 유의사항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 안전모 착용 등의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

-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다목).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면허**
>
> Q.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등교할 때 공유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
> A.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고등학생의 경우 면허가 있으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운전금지

-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

> ※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3).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을 것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무게는 2kg 이하일 것
  -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 안전모의 뒷 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한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 ※ **권고사항**: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 및 손목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2020. 4. 21.),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수칙 강조』 참조].

> ※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8호의2 및 별표 6 제10호).

위험한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금지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가 둥글게 가공되지 않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7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 ※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

야간 운전 시 야광띠 등의 발광장치 착용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

> ※ 등화점등을 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7호의2).

초과탑승 금지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 2명

※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4).

※ **전동킥보드 등의 초과탑승 금지 Q&A**

Q. 전동킥보드에 2명이 같이 탑승하고 가는 걸 봤는데, 불법 아닌가요?

A.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 되며, 승차정원을 초과해 탑승한 경우에는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장·불량 사고 예방을 위한 주행 전 점검 사항

전동킥보드 이용 시 고장이나 불량 사고 예방을 위해 주행 전에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행 전 핸들이나 바퀴가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고정부품의 파손·훼손(금이 가 있거나 휘어짐 등)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핸들 높낮이 조절 고정부품, 접이식 제품 고정부품 등

- 저속에서 브레이크·가속 레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 제품 이상 시 임의로 변경·수리하지 말고, 구매처 또는 제조업체에 문의하세요.

<출처: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 12. 18.), 『전동킥보드 이용 때 주의사항』 참조>

2.2. 통행이 가능한 도로

2.2.1.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주행하기

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나 차도 등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 통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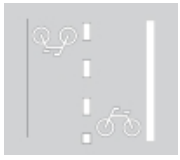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 서울시 자전거길 안내 지도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데이터 이용하기>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지도 검색 서비스 또는 해당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도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본문).

구분	내용
①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②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③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④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자전거 안전표지의 종류와 안전표지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도로교통법」 제4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6 및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전동킥보드 등 주차장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임을 표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도로	 전동킥보드 등을 주차할 수 있는 지역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가 길을 건널 수 있는 구역(타고 건널 수 있음)	 자전거 횡단도 노면표시	 자전거 전용도로 노면표시
전동킥보드 등 통행금지	**자전거표지**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도로**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을 금지	 자전거의 통행이 많은 지점임을 알림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및 차도 통행(보도통행금지)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2제2항).

※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하는 것이 가능(「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단서).

> ※ 위 보도와 차도 간의 통행 구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도로 운전한 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함)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예외적으로 도로의 중앙, 좌측 및 보도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4항).

-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 √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 또한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제2호 및 제3호).

- 안전표지로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 전동킥보드 등의 보도 주행 금지
>
> Q.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보도로 전동킥보드가 다니는 걸 자주 목격하는데, 충돌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구요. 전동킥보드로 보도 주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 A.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만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반드시 차도로 다녀야만 합니다. 다만, 안전표지로 보도 통행이 허용된 경우나 도로의 파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공원관리청이 허용하는 구간 통행

▪ 누구든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6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5호 본문).

▪ 다만,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함)은 30kg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25km/h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5호나목).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이 제한되는 지정구간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통행제한구간 지정 고시

▪ 도로관리청은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3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구분	내용
▪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관보에 게재
▪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

통행제한구간 안전표지 설치

▪ 통행제한구간을 지정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

2.3. 안전운전을 위한 수칙

2.3.1. 도로주행 시 준수사항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함)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함)
-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함)을 보조하는 다음의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함)
  - √ 모범운전자
  - √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 √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 다만, 위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함)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제2항).

> ※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보행자 보호의무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보행자(전동킥보드 등에서 내려서 전동킥보드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를 포함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 ※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을 포함함)한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1호).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를 불이행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7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의무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

-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 위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4호).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을 해야 합니다.

보도 횡단 시 주의의무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지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해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이 경우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

2대 이상 병렬주행 금지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5항).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가목, 다목, 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 전동킥보드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 ※ 위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4호).

횡단보도 횡단 시 하차의무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전동킥보드 등에서 내려서 전동킥보드 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안전거리확보 의무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 ※ 일반도로에서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운전자에게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0호).

진로 양보의 의무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앞지르기 방법

▪ 원칙적으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 그러나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

> ※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8호).

교차로 통행방법

▪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 본문).

▪ 하지만, 전동킥보드 등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

> ※ 자전거 운전자등(전동킥보드 포함)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등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훅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출처: 법제처 법령해석례 17-0078, 2017. 4. 13. 회신)

> ※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5호).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 서행의무 및 일시정지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0호 및 제51호).

2.3.2. 금지되는 운전행위

무면허운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거나 해당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다목).

위반시 제재

▪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함)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함)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1호의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의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 위의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호흡조사 : 호흡을 채취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호흡조사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름

  √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운전자의 외관, 언행,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할 것

  √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할 것

- 혈액채취: 혈액을 채취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방법. 혈액 채취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름

  √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 채취로 측정을 요구하거나 호흡조사로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 채취로의 측정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등 호흡조사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할 것

  √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하여 채혈할 것

음주측정방해행위의 금지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 베라파밀염산염(Verapamil Hydrochloride)
- 에리트로마이신(Erythromycin)

음주운전의 기준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위반 시 제재

▪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함)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제2호 2., 3의2 및 제3호 가목 2.).

위반사항	내용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 (벌점 100점 부과)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 벌칙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과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64호의2 , 제64호의3 및 제64호의4).

위반사항	범칙금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경우	10만원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	13만원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약물의 영향 등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안 됩니다.

약물 등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

위반시 제재

▪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1호의5).

2.4. 주차 및 정차하기

2.4.1. 주·정차 장소 확인하기

전동킥보드 등의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는 곳이 있습니다.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전동킥보드 등을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함)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함)·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 √ 소화용수설비
  - √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시장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 주차, 정차 금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9호).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0호).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에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 방법 및 시간이 있습니다.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려는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다음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3호).

▹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 ※ 정차·주차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1호).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위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이나 경찰보조자(모범운전자 등)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와 고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주차위반 시에는 이동 명령, 견인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주차 방법 변경 또는 이동 명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차 위반을 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경찰공무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 이하 “시장등”이라 함)이 주차나 정차 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 단속담당공무원

※ 정차나 주차위반 조치에 불응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2호).

견인조치 등

▪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전동킥보드 등을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임을 알리는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그 전동킥보드 등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전동킥보드 등을 견인한 경우에는 그 전동킥보드 등이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 사용자(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함) 또는 운전자가 그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견인 전동킥보드 등의 보관 및 고지

▪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주차위반 전동킥보드 등을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해야 하며, 그 사실을 전동킥보드 등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함)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

반환을 위한 공고, 매각, 폐차 등

▪ 전동킥보드 등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를 해야 하며,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4항 및 제5항).

▪ 주차위반 전동킥보드 등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은 그 전동킥보드 등의 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전단).

※ 전동킥보드 등의 견인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견인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용의 충당, 잔액 반환 등

▪ 전동킥보드 등을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 전동킥보드 등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전동킥보드 등의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이를 공탁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7항).

3.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3.1. 사고 발생 시 조치

3.1.1.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전동킥보드 등 관련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발생 현황

▪ 최근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이용자의 급증에 따라 매해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20~30대의 젊은 층의 사고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 12. 18.),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참조].

▹ 연도별

(단위: 건,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11월)	합계
건수 (증감률)	195	229	257	571	1,252

▹ 성별

(단위: 건, (%))

구분	남자	여자	성별 미상	합계
건수 (비중)	835 (66.7)	410 (32.7)	7 (0.6)	1,252 (100)

▹ 연령별

(단위: 건, (%))

구분	10세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연령미상	합계
건수 (비중)	34 (2.7)	150 (12.0)	436 (34.8)	303 (24.2)	192 (15.3)	74 (5.9)	12 (1.0)	51 (4.1)	1,252 (100)

▹ 위해 원인별

(단위: 건, (%))

구분	운행사고	고장·불량	화재 관련	감전·누액	기타*	합계
건수 (비중)	804 (64.2)	393 (31.4)	43 (3.4)	4 (0.3)	8 (0.7)	1,252 (1000

* 기타: 광고와 상이한 기능, 제한속도 초과 제품, 미인증 제품으로 인한 위해우려 등

▸ 위해부위별

(단위: 건, (%))

구분	머리·얼굴	둔부·다리·발	팔·손	목·어깨	몸통	신체내부	기타*	합계
건수 (비중)	454 (36.3)	176 (14.1)	169 (13.5)	44 (3.5)	27 (2.1)	3 (0.2)	379 (30.3)	1,252 (100)

* 기타: 위해 부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

▸ 위해증상별

(단위: 건, (%))

구분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뇌진탕 및 타박상	신체내부 장기손상	화상	기타*	합계
건수 (비중)	415 (33.1)	282 (22.5)	164 (13.1)	6 (0.5)	5 (0.4)	380 (30.4)	1,252 (100)

* 기타: 단순 두통 및 위해증상이 확인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

사고 원인 및 위해 내용

▪ 전동킥보드의 사고 원인은 운전미숙, 초과동승 위반, 제품불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 12. 18.),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참조].

구분		내용
미끄러짐·넘어짐		▪ (9세, 남) ’17년 5월 아파트단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앞으로 넘어져 일시적인 기억상실, 얼굴・오른쪽 팔・양 무릎 타박상, 왼쪽 손목 골절 및 타박상으로 응급실 방문 및 4일을 입원함.
2인 동승, 넘어짐		▪ (26세, 남) ’20년 2월 여자친구와 동승하여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인도 턱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입술에 열상을 입음.
걸려 넘어짐		▪ (19세, 남) ’20년 4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아스팔트 도로에 생긴 홈에 걸려 넘어져 이마와 코의 열상, 골절을 입음. ※ 기타 과속방지턱,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가던 중, 돌부리,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등에 걸려 넘어진 사례가 있었음.
고장 또는 불량	제품불량	▪ (30세, 남) ’17년 9월 도로 가장자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갑자기 잡고 있던 지지대 아래쪽 부분이 부러지고 핸들이 앞으로 고꾸라져 넘어지면서 전신 타박상을 입음. ▪ (29세, 남) ’18년 7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핸들 유격 현상으로 인하여 신체 중심을 잃고 낙상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고, 얼굴, 팔꿈치, 손, 어깨, 무릎, 발가락 등 타박상을 입음.
	기능 고장	▪ (23세, 여) ’18년 10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내리막길로 접어들면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려 하였으나 작동이 되지 않아 주행 중 넘어지면서 무릎 열상을 입음. ▪ (39세, 여) ’20년 7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여해 타다가 작동이 갑자기 멈춰 오른쪽 복숭아뼈를 부딪혔고, 차도에서 멈춰 인도로 옮기던 중 바퀴가 굴러가지 않아 들면서 옮기다가 재차 부딪힘.
	부품 탈락	▪ (남) ’20년 7월 구입한지 4개월이 안 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바퀴가 빠져서 넘어지며 다침.
	폭발	▪ (39세, 남) ’20년 8월 전동킥보드 구매 후 배터리 충전을 위해 충전기를 스위치에 꽂은 후 폭발하면서 손가락 화상을 입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구호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상자 구호 등 조치 하기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함)한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 제공

> ※ 위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156조제10호).

경찰에 신고하기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등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함)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3항).

▪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4항).

※ 사고 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사고 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위의 운전자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5조).

※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5호).

도주 시 가중처벌

▪ 전동킥보드 등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를 범한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함)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위의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위반행위	피해자의 상태	처벌
단순도주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도주'의 의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12. 선고 2004도250 판결).

3.2.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배상

3.2.1.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 등 손괴 시 처벌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형사책임 관계

▪ 전동킥보드 등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으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제한속도를 20km/h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민사책임

-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 만약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전동킥보드 등 관련 보험을 들어놓았다면 신속히 보험처리를 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유서비스 업체의 전동킥보드 이용 시
이용자의 상해·손해 범위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주의하세요~!

▪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기기 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의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의 약관을 심사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①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② 사업자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③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④ 무료 쿠폰(포인트)을 임의로 회수·소멸 및 정정할 수 있는 조항
⑤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조항
⑥ 회원의 수신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
⑦ 약관의 중요 내용 변경 시 공지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
⑧ 부당하게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등

▪ 이에 따라 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입은 이용자의 상해·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② 회사 자체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던 것을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까지 확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공유서비스 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 11. 30),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 참조>

보행자가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 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

※ 보행자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 가능 여부

Q. 인도 보행 중에 뒤에서 오는 전동킥보드에 치여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에 학생이라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 것 같은데,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A.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 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대상에 전동킥보드 등도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었으나,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2020. 10. 26. 시행)을 통해 무보험자동차의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여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 시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10. 20.),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치료비 상한도>

구 분		보상한도(대인Ⅰ 기준)	부상정도*
중상	사망	1억 5천만원	사망
	상해1급	3천만원	척추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심장 파열로 수술 등
	상해2급	1,500만원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 폐 손상으로 절제술 시행 등
	·····		
경상	상해11급	160만원	뇌진탕, 안면부 코뼈 골절 (수술 불요), 발가락 골절(수술 불요) 등
	상해12급	120만원	3cm 미만 안면부 열상(찢어짐), 관절의 단순 염좌(인대 파열) 등
	상해13급	80만원	단순 고막 파열, 골절 없는 흉부 타박상 등
	상해14급	50만원	팔다리 관절 염좌(인대 파열), 사지의 단순 타박 등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10. 20.),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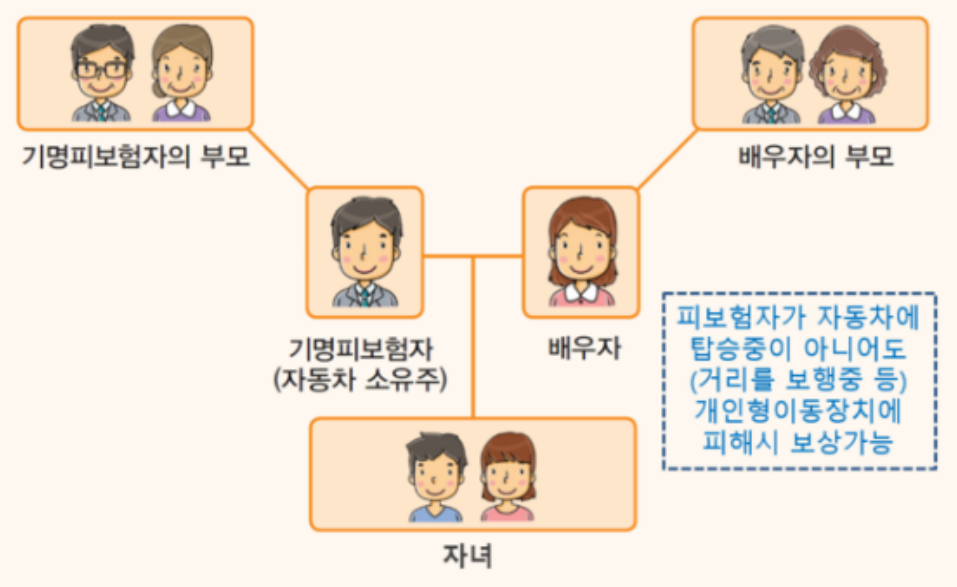
가해자가 피해보상 거부 시 보험사에 직접 피해보상 신청하세요!

▪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 가해자의 정보(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됨)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본인의 가족이란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이 포함)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해야 보상 가능

▪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 I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함(가해자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

<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 범위 >



※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취지가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자동차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점임을 감안하면 먼저 가해자와 보상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10. 20.),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참고>